

#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710
----------	-----

2019년 6월 28일  
행정자치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
- 나. 제출일 : 2019년 5월 24일
- 다. 회부일 : 2019년 5월 30일
- 라. 상정일 : 제28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 
2019년 6월 19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)

### 가. 제안이유

- 2013년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정 이후,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개소·운영하여 왔음.
- 전문성 있는 민간 운영주체를 통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운영·관리함으로써, 민간의 전문성과 관계망을 활용해 사업성과를 제고하여 왔음.

- 2013년 7월,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최초로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,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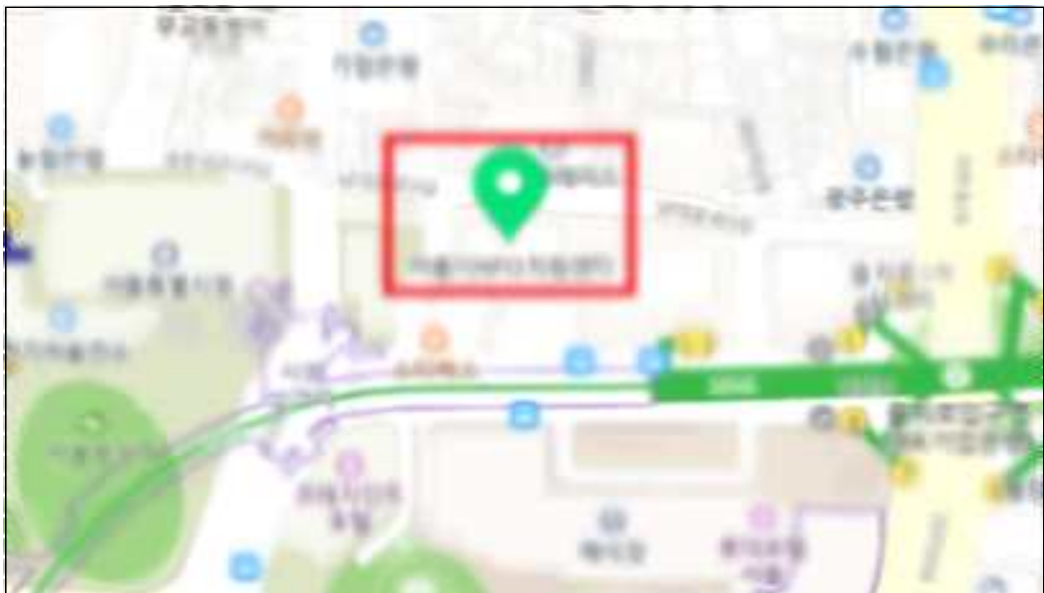
- 1)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
- 2)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 - (1) 민간위탁 추진 근거
    -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1조
   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  - (2)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   -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현장 기반 중간지원 필요
    - 다양한 민간단체, 공익활동가들과의 소통·협력을 통해 유연한 운영 가능

⇒ 직접 운영 대비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필요
- 3) 위탁사무 내용(위탁 대상 사무, 범위 등)
  - (1) 사업목적
    -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
  - (2) 위탁사무 내용
    - ①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    - ②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시설 및 물품관리
    - ③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·설비 등의 제공
    - ④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되는 교육·훈련 등 인재육성

- ⑤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상담·컨설팅
- ⑥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
- ⑦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·연구
- ⑧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 정보의 집적·제공
- ⑨ 그밖에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4)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명 칭 : 「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」
- 개관시기 : 2014년 10월
- 소재지 :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, 1·2층(을지로1가, 부림빌딩)
- 시설규모 : 전용 867.4㎡
  - 1층 : 열린 공간(310㎡, 약93평) ⇨ 대강당, 전시공간 등
  - 2층 : 사무 공간(557㎡, 약169평) ⇨ 협업공간, 회의실, 사무실, 교육장 등



< 서울시 NPO지원센터 위치도 >

### 5) 민간위탁기간

-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(2019.11.15. ~ 2022.11.14.)

### 6) 수탁자 선정방식

- 공개모집 → 적격자 심의 → 수탁자 선정

### 7)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2019년 소요예산 : 2,282,835천원

- 민간위탁금 2,283백만원 (인건비 845, 운영비 412, 사업비 1,026)

### 8)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해당없음.

- ※ 「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」에 따라, 재위탁(공개모집)할 경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절차 없음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9조(설치)
-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센터의 위탁)

### 나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「2019년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보고서」

**다. 합 의 :** 해당사항 없음.

**라. 기 타 :** 해당사항 없음.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### 가. 동의안 개요

-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이하 '민간위탁 조례')<sup>1)</sup>에 따라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(2013년 11월 최초 위탁)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  - 개정(2019.3.)된 민간위탁 조례는 자의적으로 운영되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되었는바, 이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한 것임.
  - 본 동의안은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다양한 민간단체와 공익 활동가들과의 소통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- 
- 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  -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###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현황

근거조례	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
심의기구	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
사업범위	서울시 전역
사업영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광역 단위 NPO 지원 총괄</li> <li>· NPO역량강화, 지속가능성 지원</li> <li>· 공익활동 기반조성 및 제도·정책 발굴</li> <li>· NPO 정책역량 강화 등</li> </ul>
위치	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,2층
규모	전용 868㎡
주요시설	· 다목적강당, 교육실, 회의실, 사무실 등
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6명</li> <li>- 센터장1, 실장2, 직원13</li> </ul>
소요예산	2,283백만원('19년도)
민간위탁	2013년 11월(사단법인 시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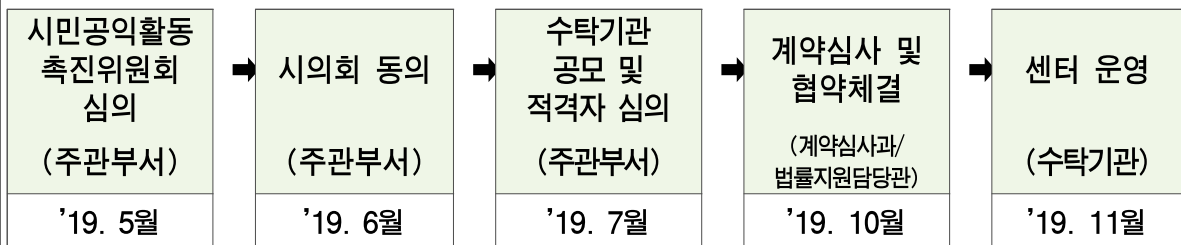
-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운영방안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19년 11월부터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.

### 위탁 운영 방안

- 위탁기간 : 3년(2019.11.15. ~ 2022.11.14.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 → 적격자 심의 → 수탁자 선정
- 사업비: 2,283백만원(인건비 845, 운영비 412, 사업비 1,026)
- 위·수탁 사무
  -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  -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시설 및 물품관리

-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·설비 등의 제공
-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되는 교육·훈련 등 인재육성
-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상담·컨설팅
-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
-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·연구
-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 정보의 집적·제공
- 그밖에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○ 세부 추진 절차



※ 「서울시 민간위탁조례」 및 「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」에 따라 추진

## 나.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

- 서울시는 “서울시 NPO지원센터”를 조성하여 2013년부터 민간위탁 (사단법인 시민)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 2018년 6월 “동북권 NPO 지원 센터”를 민간(사)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에 위탁하였고, 2019년 “동남권 NPO지원센터”설치를 추진하고 있음.

### 〈 동남권 NPO지원센터 설치 추진 〉

- 주요기능 : 동남권 NPO 역량강화 및 지역의제 해결 지원, 활동공간 제공 등
- 사업범위 : 서초·강남·송파·강동구(4개 구)
- 추진계획 : ('19)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(8월) → 센터 설치 및 수탁자 공모
- '19 예산 : 250백만원(임차료50, 보증금100, 내부수선100)

- 한편, 금천구(2016년)와 노원구(2017년), 중랑구(2019년)는 독자적인 NPO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.

(2019. 5월 기준)

연번	자치구	근거 조례	센터명	개소	직영/위탁 (수탁법인)	인력 (명)	예산 ('19년/백만원)
1	금천구	-	금천구NPO지원센터	2016	직영	-	1.5
2	노원구	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	노원구 시민사회(NPO) 지원센터	2017	직영	-	-
3	중랑구	-	중랑구NPO지원센터	2019	직영	1	69

- 향후 민선 7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따르면 생활의제, 지역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공익활동 촉진을 ‘권역별 NPO센터’의 조성 또는 자치구 단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.
- 동 센터의 민간위탁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, 「서울 시민참여지원센터 설립·운영계획」 수립이후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동의안이 가결되었고(2013년 7월),
  - 2013년 11월에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였으며, 2016년 11월 재계약('16. 11. 15. ~ '19. 11. 14.(3년))을 체결하였음.
  - 재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민간위탁 재위탁(공모)을 추진하고 있음.

〈 민간위탁 추진 경과 〉

- (가칭) 서울 시민참여지원센터 설립·운영계획 수립 : '12.11월
-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정·공포 : '13. 5. 16.

〈최초위탁〉

-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결 : '13. 7. 14.
- 수탁기관 공모 : (1차)'13. 8. 26.~9. 25. (재공고)9. 27.~10. 11.
-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: '13. 10. 16.
  - 수탁기관 : 사단법인 시민(이사장 권미혁)
- 위수탁 협약 체결 : '13. 11. 15. ~ '16. 11. 14.(3년)



- 위수탁 협약 변경 체결 : '14. 9. 11.  
- 사유 : △민간위탁 조례 개정 사항 협약서 반영 △센터 위치 변경

- 서울시 NPO지원센터 정식 개관 : '14. 10. 1.

<재계약>

-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 : '16. 2~4월
-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통과 : '16. 6. 30.
-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: '16. 7. 19.
- 시의회(행정자치위원회) 보고(270회) : '16. 8. 31.
- 위수탁 협약 체결(재계약) : '16. 11. 15. ~ '19. 11. 14.(3년)

<재위탁(공모)>

-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 : '19. 2~4월
-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계획 수립 : '19. 4월

- 서울혁신기획관은 “서울시 NPO지원센터”의 지속적인 민간위탁이 직영 대비 서비스 향상과 전문성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.
-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관주도의 직영방식보다 중립적 성향의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지역 기반의 비영리단체 역량강화 및 지역 단위 공익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·저효율을 개선하거나,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,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임.
- 동 센터의 성과 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며, 주요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음.

- 2016년 종합성과평가 결과 82점으로 재계약 자격 충족하여 3년 재계약
- 2019년 종합성과평가 결과 85점으로 사업성과 '매우 우수' 수준 평점

평가범주	사업 인프라	사업활동	사업성과	지도점검 이행노력	시민 만족도	합계
배점	24	13	43	5	15	100
득점	19.42	10.43	37.76	4.50	13.35	85.46

○ 주요 사업성과

- ('13~'16) NPO조직운영 역량강화, 미트쉐어, 활동가 역량강화, 공간지원 등
- ('16~'19) NPO조직변화 지원, 국제컨퍼런스, 파트너페어, 정책연구 등

○ 다만,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타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여부 및 민간위탁의 운영 성과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○ 첫째, 서울시는 “NPO 활동공간 제공 및 역량강화 지원, 공익활동 촉진” 등의 지원활동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업무 중복 등 예산 낭비 및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임.

※ 시민사회, 공유경제, 청년문제 등 사회혁신활동 수행 단체를 지원하는 “서울혁신센터”,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·기관을 지원하는 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”, 청년단체를 지원하는 “청년청”, “청년허브” 등 NPO 등을 지원하는 유사 민간위탁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업무의 구분과 지원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는 상황임.

○ 둘째, 민간위탁 실시 이후에는 매년 23억원 규모의 민간위탁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바, 예산 투입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보다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	민간위탁금	인건비	운영비	사업비	인력
2019	2,283	845	412	1,026	16명

- 셋째, 동 센터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보고서의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, 사업비 중심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<sup>2)</sup>과,

〈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비중 분석 〉

- 사업비 비중	: 2016년 43.82%	→ 2017년 49.74%	→ 2018년 41.20%
- 인건비 비중	: 2016년 32.00%	→ 2017년 30.51%	→ 2018년 37.96%
- 운영비 비중	: 2016년 24.18%	→ 2017년 19.75%	→ 2018년 20.84%

- 사업 성과 측정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측정기준이 부재한바, 개별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환류 모델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목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<sup>3)</sup>도 있었음.
  - 또한, 매년 다수의 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(2016년 2명, 2017년 5명, 2018년 2명)하고 있으며, 특히 실장 및 팀장급의 퇴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정적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직감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<sup>4)</sup>된다고 하겠으며,
  - 센터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 미공개와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용역을 준 사례가 있음이 지적<sup>5)</sup>되고 있는바, 이에 대한 점검과 함께 위탁 사무 개선 등의 요구된다고 하겠음.
- 한편, 현재 운영중인 동 법인(사단법인 시민)은 재계약시 “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”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조례를 미준수한바 있으며,

2)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(2019.4, 6쪽)  
 3)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(2019.4, 7쪽)  
 4)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(2019.4, 27쪽)  
 5)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(2019.4, 5쪽, 45쪽)

##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설치 및 기능) ① 시민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NPO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NPO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고 한다)의 위탁 및 운영

2.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·평가에 관한 사항

3. 센터 시설물 및 물품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

4. 시민의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시민사회발전 및 시민공익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- 직전 센터장이 동 센터의 업무와 예산을 총괄하는 서울시 국장(서울시 개방형직위 3호)으로 임용되어 동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 추진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바,
- 향후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NPO지원센터를 운영할 수탁자를 공개 모집할 경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 진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.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.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 (재석위원 8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#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71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5월 24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2013년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정 이후,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개소·운영하여 왔음
- 나. 전문성 있는 민간 운영주체를 통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운영·관리함으로써, 민간의 전문성과 관계망을 활용해 사업성과를 제고하여 왔음
- 다. 2013년 7월,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최초로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,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### 1)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1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## 2)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현장 기반 중간지원 필요
- 다양한 민간단체, 공익활동가들과의 소통·협력을 통해 유연한 운영 가능
  - ⇒ 직접 운영 대비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필요

다. 위탁사무 내용(위탁 대상 사무, 범위 등)

### 1) 사업목적

-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

### 2) 위탁사무 내용

- ①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- ②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시설 및 물품관리
- ③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·설비 등의 제공
- ④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되는 교육·훈련 등 인재육성
- ⑤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상담·컨설팅
- ⑥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
- ⑦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·연구
- ⑧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 정보의 집적·제공
- ⑨ 그밖에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#### 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명 칭 : 「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」
- 개관시기 : 2014년 10월
- 소재지 :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, 1·2층(을지로1가, 부림빌딩)
- 시설규모 : 전용 867.4㎡
  - 1층: 열린 공간(310㎡, 약93평) ⇨ 대강당, 전시공간 등
  - 2층: 사무 공간(557㎡, 약169평) ⇨ 협업공간, 회의실, 사무실, 교육장 등



< 서울시 NPO지원센터 위치도 >

#### 마. 민간위탁기간

-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(2019.11.15. ~ 2022.11.14.)

#### 바. 수탁자 선정방식

- 공개모집 → 적격자 심의 → 수탁자 선정

#### 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2019년 소요예산 : 2,282,835천원
  - 민간위탁금 2,283백만원 (인건비 845, 운영비 412, 사업비 1,026)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해당없음

- ※ 「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」에 따라, 재위탁(공개모집)할 경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절차 없음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9조(설치)
- 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센터의 위탁)

나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「2019년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보고서」

※ 작성자 : 민관협력담당관 시민협력팀 문성훈 (☎2133-6561)